
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1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3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(3. 29.시행)에 따른 국장급 기구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을 신설하고,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, 책임 있는 조직운명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

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

- 국 단위 개정사항 : 안 제5조, 제8조
 - 국 신설 : 기획전략국 - 기획예산과, 교육정책과, 도시공원과, 미래공간과
 - 명칭변경 : 교육복지국 → 주민복지국
- 과 단위 개정사항 : 안 제4조, 제5조(신설), 제7 ~ 10조
 - 정책추진단 : 폐지
 - 기획예산실 : 명칭변경(기획예산실 → 기획예산과), 국 이동(기획예산실 → 기획전략국)
 - 교육정책과 : 국 이동(교육복지국 → 기획전략국)
 - 도시공원과 : 과 분리(공원녹지과 → 도시공원과, 산림과), 국 이동(문화관광국 → 기획전략국)
 - 공공시설과 : 명칭변경(미래공간과), 국 이동(건설도시국 → 기획전략국)

- 일자리경제과 : 명칭 변경(경제산업과)
- 청소위생과 : 국 이동(경제환경국 → 주민복지국)
- 생활보장과 : 명칭 변경(사회복지과)
- 희망지원과 : 명칭 변경(행복나눔과)
- 안전총괄과 : 명칭 변경(안전하천과)
- 도시계획과 : 명칭 변경(도시정책과)
- 팀 단위 개정사항 : 안 제5조, 제7 ~ 10조, 제12조
 - 정책추진단 : 폐지(정책사업1, 정책사업2, 정책사업3)
 - 기획예산과 : 신설(정책사업, 인구청년정책)
 - 교육정책과 : 신설(교육협력), 명칭 변경(평생교육→교육청소년), 폐지(청소년)
 - 도시공원과 : 팀 이동(녹지, 정원, 공원개발, 공원관리 ← 공원녹지과)
 - 미래공간과 : 신설(공간지원), 명칭 변경(공공시설1→공간창조 / 공공시설2→공간조성)
 - 경제산업과 : 신설(원스톱기업), 폐지(사회적경제)
 - 농업정책과 : 신설(농촌활력)
 - 복지정책과 : 신설(노인시설)
 - 사회복지과 : 팀 이동(장애인복지 ← 행복나눔과, 주거의료복지 → 행복나눔과)
 - 행복나눔과 : 팀 이동(주거의료복지 ← 사회복지과, 장애인복지 → 사회복지과)
 - 건축과 : 명칭 변경(건축물관리 → 건축안전)
 - 문화예술과 : 신설(국가유산관리), 명칭 변경(국가유산 → 국가유산정책)
 - 관광과 : 명칭 변경(관광개발 → 관광개발1, 교도소후적지개발 → 관광개발2)
 - 산림과 : 신설(산림정책), 팀 이동(산림조성, 산림보호 ← 공원녹지과)
 - 건강증진과 : 명칭 변경(질환관리 → 방문보건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 ~ 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(2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4. 5. 23. ~ 6. 2.(1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2024. 5. 30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(1건)

- 의견내용 : 안 제9조 제1항 도시계획과의 명칭변경 관련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국장 및 실·단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”을“(국장 및 실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실장, 단장, 과장”을 “실장, 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위하여 자치행정국”을 “위하여 기획전략국·자치행정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실·법무감사실·정책추진단”을 “법무감사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기획전략국)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, 교육정책과, 도시공원과, 미래공간과를 둔다.

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획·정책사업·예산·홍보·혁신평가·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획·교육협력·보육·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
3. 녹지·정원·공원개발·공원관리에 관한 사항
4. 공간기획·공간창조·공간조성·공간지원에 관한 사항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일자리경제과·교통과·환경과·농업정책과·청소위생과”를

“경제산업과·교통과·환경과·농업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1. 지역경제·에너지관리·기업지원·원스톱기업·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
4. 농정기획·농촌활력·축산·가축방역·친환경농업·농산유통에 관한 사항

제8조(중전의 제7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주민복지국)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·사회복지과·행복나눔과·청소위생과를 둔다.

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복지기획·노인복지·노인시설·여성가족에 관한 사항
2. 기초생활보장·장애인복지·복지조사·복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복지나눔·복지연계·주거의료복지·드림스타트·아동보호에 관한 사항
4. 청소행정·재활용·폐기물관리·위생행정·위생지도·식품안전에 관한 사항

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건설과·안전총괄과·도시계획과·도시정비과·건축과·공공시설과·토지정보과”를 “건설과·안전하천과·도시정책과·도시정비과·건축과·토지정보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건축물관리”를 “건축안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·관광과·공원녹지과”를 “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·관광과·산림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정책·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
2. 체육진흥·공공체육시설·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
3. 관광정책·관광콘텐츠·관광개발에 관한 사항
4. 산림정책·산림조성·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제3항제2호 중 “질환경리”를 “방문보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각각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“국장·소장·실장·단장”을 “국장·소장·실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“실·단·과”를 각각 “실·과”로 한다.

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실·단·과”를 “실·과”로 한다.

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중 “국장 및 실·단·과장”을 “국·소장 및 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호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장 및 실·단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본청의 국장 및 실장, 단장, 과장,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·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조(국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·경제환경국·교육복지국·건설도시국·문화관광국을 둔다.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의 설치)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·법무감사실·정책추진단을 둔다.</p> <p>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·예산·홍보·혁신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제5조 ~ 제9조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2조(국장 및 실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 ----- 실장, 과장, -----</p> 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위하여 기획전략국·자치행정국·-----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의 설치) ① ----- 법무감사실-----.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삭제)</p> <p>제6조 ~ 제10조 (현행 제5조 ~ 제9조와 같음)</p> <p>제5조(기획전략국) ① <u>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, 교육정책과, 도시공원과, 미래공간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 <u>기획·정책사업·예산·홍보·혁신평가·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경제환경국) ① <u>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·교통과·환경과·농업정책과·청소위생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<u>지역경제·에너지관리·기업지원·일자리 창출·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농정기획·축산·가축방역·친환경농업·농산유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청소행정·재활용·폐기물관리·위생행정·위생지도·식품안전에 관한 사항</u></p>	<p>2. <u>교육기획·교육협력·보육·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녹지·정원·공원개발·공원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공간기획, 공간창조, 공간조성,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7조(경제환경국) ① ----- <u>경제산업과·교통과·환경과·농업정책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지역경제·에너지관리·기업지원·원스톱 기업·일자리창출</u>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농정기획·농촌활력·축산·가축방역·친환경농업·농산유통</u>-----</p> <p>(삭제)</p>
<p>제7조(교육복지국) ① <u>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·복지정책과·생활보장과·희망지원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교육복지국장</u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<u>교육기획·보육·평생교육·청소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복지기획·노인복지·여성가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기초생활보장·복지조사·복지관리·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8. <u>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</u></p>	<p>제8조(주민복지국) ① <u>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·사회복지과·행복나눔과·청소위생과</u>-----.</p> <p>② <u>주민복지국장</u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<u>복지기획·노인복지·노인시설·여성 가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기초생활보장·장애인복지·복지조사·복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복지나눔·복지연계·주거의료복지·드림 스타트·아동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청소행정·재활용·폐기물관리·위생행정·위생지도·식품안전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스타트·아동보호에 관한 사항</u> 제8조(건설도시국) ① <u>건설도시국에 건설과·안전총괄과·도시계획과·도시정비과·건축과·공공시설과·토지정보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 1. ~ 6. (생략) 7. <u>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건축물관리</u>에 관한 사항 8. <u>공간기획·공공시설에 관한 사항</u> 9. (생략)</p> <p>제9조(문화관광국) ① <u>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·관광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에 관한 사항</u> 2. (생략) 3. <u>관광정책·관광콘텐츠·관광개발·교도소 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</u> 4. <u>녹지·정원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에 관한 사항</u> 5. (생략) 6. <u>체육진흥·공공체육시설·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1조(소장) ① ~ ③ (생략) 1. (생략) 2. <u>건강증진·질환관리·가족보건·치매관리·건강증진센터운영</u></p>	<p>제9조(건설도시국) ① ----- <u>건설과·안전하천과·도시정책과·도시정비과·건축과·토지정보과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건축안전</u>에 관한 사항 8. (삭제)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문화관광국) ① ----- <u>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·관광과·산림과</u>-----.</p> <p>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정책·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</u> 2. <u>체육진흥·공공체육시설·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</u> 3. <u>관광정책·관광콘텐츠·관광개발에 관한 사항</u> 4. <u>산림정책·산림조성·산림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2조(소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·<u>방문보건</u>·----- -----</p>

□ 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